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4
----------	-----

제 출 일 : 2025. 5. 30.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 및 관련 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문 및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 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 제1항 조문 정비
- ‘학교 밖 청소년’ 정의 구체화
- 관련 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 제2항, 제3항 조문 정비
-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정의 구체화
- 관련 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5조 제2항 조문 정비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 별지 제1호서식 첨부
- 제5조 ③항 위원회 의 → 위원회의
-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1) 협의기간 : 2025. 1. 14. ~ 2025. 1. 22.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예산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1)예고기간 : 2025. 3. 27. ~ 2025. 4. 16.(20일간)

2)예고결과 : 의견없음

○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

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등)”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의”를 “위원회의”로,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청소년관련”을 “청소년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청소년사업”을 “청소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처리 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을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원이 임무”를 “임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개회”를 “개최”로 한다.

제12조 중 “학교밖”을 “학교 밖”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받을”을 “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기관·단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기간	. . . ~ . . .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금	
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				
보조금 신청액		예금계좌(은행)		예금주
원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법인)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직원현황, 운영현황 등) 4. 통장 사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소관 관 · 과		청년정책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청년정책과장 박 미 경
	팀장 직위·성명	청 소 년 지 원 팀 장 최 부 전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명 석 (031-590-226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이란 정규학교 교육 이 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생략)

제5조(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

----- 업무담당 국장-----
-----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
공 대학교수

4.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5. ~ 7.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
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시의원 -----

<삭 제>

2. 청소년 관련 -----
--

3. -----
-- 청소년 사업---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 처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

② 위원의 해촉 -----

-----.

제8조(위원의 해촉) ----- 위원
이 다음 -----
----- 위원을
해촉-----.

1. <u>위원이 임무를</u>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 4. (생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②·③ (생략)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u>개회</u>한다. ⑤·⑥ (생략)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u>학교 밖</u>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신청 등) ① <u>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16조(건강검진 및 체력검사) 시장은 「<u>청소년복지지원법</u>」 제6조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과 체력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u>임무</u>-----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개최</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 등) ----- <u>학교 밖</u> ----- 제13조(지원 신청 등) ① <u>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강검진 및 체력검사)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
--	--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 등) 시장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 등) ----
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
과 관련하여 남양주시가 관리하	-----
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
<u>받을</u>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	<u>받은</u>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
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상위 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제2조 용어 정비
 - ※ ‘학교 밖 청소년’ 정의 구체화
- 상위 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제2조 용어 정비
 - ※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정의 구체화
- 관련 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5조 제2항 용어 정비
 -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2020. 5. 19. 개정)
-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 별지 제1호서식 첨부
 - ※ 제5조 ③항 위원회 의 → 위원회의
 - ※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4. 작성자

청년정책과 과장 박미경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청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04)

1. 청년정책과-695(2025.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5A경기남양004)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교육	복지국장	전결 2025. 1. 16. 양현모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358	(2025. 1. 16.)	접수	청년정책과-745	(2025. 1. 1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여성아동과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남양004			
정 책 명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청년정책과		
	담당자명	오명석	전화번호	031-590-226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정책과)	○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규정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청년정책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청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06)

청년정책과-671(2025.1.14.)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팀장	대결 2025. 1. 16. 박호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661	(2025. 1. 16.)	접수	청년정책과-783	(2025. 1. 1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06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평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청년정책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명석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1. 16.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5년 1월 16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청년정책과장 귀하			

붙임 4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청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 남양주시 청년정책과-671(2025. 1. 14.)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우리 시 조례의 현행화와 조례 운영에 필요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5. 1. 15. 양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780	(2025. 1. 15.)	접수	청년정책과-688	(2025. 1. 1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청년정책과-4191(2025. 3. 21.)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6.(수)(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오명석	청소년지원팀장	최부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문화교육국장	전결 2025. 4. 18. 이형숙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철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행	청년정책과-5553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청년정책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266	팩스번호	031-590-8290	/	sadviolet@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